

#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 해설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 1) 기술장벽의 정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EC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국가표준인 DIN, NF, BS를 각각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시장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며, 각국의 제조업자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 수출국의 공업표준에 각각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각국의 공업표준의 상이성은 수출제품 제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수입제

한적 효과를 낳기 때문에 잠정적인 기술장벽이 되며, 또한 특정국가가 각종 표준·기술규정·인증 및 검사 제도 등을 국가별로, 또는 내·외 국민간에 차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이 된다.

#### 2) 협정의 성격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약칭 TBT 협정이라 하며, 주로 표준(규격) 및 기술규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칭 Standards Code(표준협정)라고도 불리운다.

기존의 UR이 타결되기 이전에는 가입국인 38개국 1공동체(EC)에만 그 존속 의무가 있었으나 UR 타결 이후 '95년부터 WTO 협정이 발효되게 되면 전 가입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된다.

### 2. TBT 협정문의 주요내용

#### 1) 주요 내용

##### 가. 기술규정 및 표준

국제표준과 인증제도가 생산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국제무역을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 동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이들 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나. 기술규정 및 표준의 채택

체약국(TBT 협정 가입국)들은 수입물품에

편집자 註 : 본고는 세계 교역에 일대 변화를 몰고오게 될 UR 협상 종결과 더불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유력시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그 의의와 주요 내용 그리고 민간표준기관 등의 역할 등을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이나 국제기술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자국의 기후조건, 지리적 요인, 국가안보, 보건, 위생, 환경보호 등의 요인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특정 체약국이 기술규정과 표준을 제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간행물에 공표하고 WTO 사무국을 통하여 타체약국에 통보해야 한다.

즉, 국가안보, 보건, 환경보호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국들은 기술규정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에 합리적인 시차를 둬으로써 수출국, 특히 개도국의 수출업자가 생산방법 또는 제품을 수입국의 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용

수입상품의 검사, 조건, 방법, 행정절차 및 수수료에 있어서도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토록 하여 정정조치가 가능토록 보장하여야 한다.

체약국들은 가능한 한 타체약국 영토내에 있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시험결과나 인증서 또는 타체약국 생산자가 발행한 자기 인증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라. 인증 제도

인증제도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며,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체약국들은 채택하려는 인증제도를 공표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타체약국에 해당 제도에 관한 내용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마. 정보 및 기술지원

모든 체약국들은 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이 제안하였거나 채택한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에 대하여, 타체약국이 질의할 경우 이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질의처(Enquiry Point)를 두어야 한다.

WTO 사무국에 대한 통보(서)는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하여야(되어야) 한다.

체약국들은 개도국의 국가표준기구 설립이나 국제표준기구에의 참여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바. 개도국 우대 조항

체약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개도국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수출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국제표준이 있다 하더라도 개도국의 특수한 기술적, 사회적 조건과 개발 필요성에 따라 그들의 토착기술과 생산방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개도국의 개발, 재정적 필요 및 무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제 표준을 사용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체약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가 개도국의 수출증대와 시장다변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사. 분쟁 해결

TBT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분쟁은 DSB(분쟁해결기구 : Dispute Settlement Body)에 통고하여 해결한다.

### 3. 공정관행규약의 주요내용 및 이에 따른 비정부 표준기관의 의무사항

#### 1) 공정관행규약의 주요내용

표준의 준비·채택 및 적용에 있어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및 모든 비정부 표준기관에까지 확대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지방정부차원은 해당이 없으나 민간차원의 단체표준 제정기관들의 경우 이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표준기관의 표준개발시 예외적인 사항(불충분한 보호수준, 기후·지리적 요인, 기본적인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관련 국제표준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을 표준개발의 토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개발업무의 중복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위해서 회원국내 개별 표준기관들 및 지역 표준기관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표준의 제정시 타 WTO 회원국에게 60 일간의 의견제시 기간을 허용하고 타 WTO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표준제정 업무계획 공표시 각 표준별로 의견제시기간을 명시하고 최소한 6 개월에 1회 표준제정 업무계획을 ISO/IEC 정보센터에 통지하고 업무계획을 간행물로 공표한다. 통지방법은 자국의 ISO/IEC 회원기관을 통하여 ISO/IEC 정보센터에 통지하게 된다.

## 2) 비정부 표준기관(민간표준기관)의 의무사항

규격 제·개정시 관련 국제표준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규격 제·개정과 관련한 업무계획의 존재를 사전에 ISO/IEC 정보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통보경로 : 우리나라의 ISO/IEC 정회원인 공업진흥청

—통보주기 : 최소한 6 개월마다 공표

—통보방법

- 기관명칭 및 주소
- 업무계획을 공표할 간행물의 명칭 및 주소
- 업무계획기간
- 간행물의 가격(무료인 경우는 제외)
- 간행물 입수처 및 입수방법

—통보내용

- 통보문 형식은 추후 공업진흥청에서 작성

하여 배포예정

- 통보문 작성시 사용언어는 영어로 해야 함 또한 ISO/IEC 정보센터에 통지한 후 국내에 구체적인 규격 제·개정 업무계획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

—공표방법 : 국가(예 : 관보) 간행물에 공표

—공표주기 : 최소한 6 개월마다 공표

—공표내용

- 기관명칭 및 주소
- 현재 준비중이거나 이전기간중 기 채택한 표준
- ISONET 규정에 의거한 표준의 주제별 분류 및 표준개발단계
- 제정추진중인 각 표준(규격)별 의견제시 허용기간  
(의견제시 허용기간은 최소 60일로 하여야 함. 단, 보건·안전·환경상의 이유로 긴박한 경우에는 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3) 의무개시일

UR 협정 발효일부터 발생되는데, 현재로서는 '95. 1. 1일부터가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 4. 의무위반시 발생하는 문제점

- ① WTO 116개 회원국으로부터 각종 공식항의 및 사정 요구
- ② 계속적인 의무이행 위반시 이해 관련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DSB(분쟁조정기구)에서 조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 및 방문 조사 실시
- ③ WTO로부터 시정 명령—중앙정부의 감독대만 책임 추궁
- ④ WTO로부터 TBT 협정 불이행국으로 지정
- ⑤ WTO 체제에서 누리던 각종 무역상 이익수혜 중지
- ⑥ WTO 체제로부터의 축출 등 강력한 제도적 제재